

【사건번호 2020-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리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사편찬위원회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근대지리데이터
-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한국역사인물 온톨로지 설계와 LOD 서비스 구축 및 운용을 주제로 한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데이터로 수정·갱신중이며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예정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 한국근대지리정보 웹페이지¹⁾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정보 중 지도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RAW DATA(데이터베이스 설계명세서 또는 설계파일 포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 현황

- 피신청인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편찬·보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를 통해 총 104종 880만건의 데이터를 제공 중임

*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역사자료를 선별하여 원문이미지, 국문번역자료, 해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http://db.history.go.kr/>)

-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 메뉴인 한국근대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와 달리 첫 화면에 “해당 정보는 시범서비스 중이고, 데이터가 수정·갱신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음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지도(GIS 베이스맵)에 기반하여 특정 장소(교육 시설, 군사시설, 사법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시설명/위치번호/도엽명/측도년도/발행년도/지도소장처 등)를 제공

1) http://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
 - * DB로 구축되어 웹페이지에서 검색·열람 서비스 중임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제3자의 권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권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예외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데이터의 불완전성만을 주장하는바, 이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정비한 후 정식 서비스가 되면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제26조제2항), 제공거부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제17조제1항), 데이터의 품질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제36조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범위를 오류 없는 완전한 데이터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고

관련 사례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 사건(2018-011)

- (신청내용)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해당 데이터는 수시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라는 이유로 제공거부
 - * 한국문집총간(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저작된 역대 한국인의 주요 문집을 간행)에 수록된 작품의 키워드를 모아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덧붙여 작성한 자료
- (조정내용)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되, 신청인이 이를 이용할 때에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출처와 함께 신청 데이터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및 설계명세 파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ID_기호(id_sym), 기호명칭_한자(nm_chn), 기호명칭_한글(nm_kor), 출전_기호명칭(ref_nm), 지도기호_코드_대(sym_cls1), 지도기호_코드_중(sym_cls2), 지도기호_코드_소(sym_cls3), 기호지명_코드(legendtype), ID_도엽(id_map), 대표시기(basetime), 행정구역_LV1(adm_lv1), 행정구역_LV2(adm_lv2), 행정구역_LV3(adm_lv3), 입력자(person1), 검수자(person2), 비고(comment), 경도(long), 위도(lat), GID(dig(objectid)), GEOM(geom(shape))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권고하는 오픈포맷 형태(CSV, XML 등)로 제공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목적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는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시점 및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처분은 공공데이터법상 정당한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이미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근거가 없음
 - 다만 현재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를 정비 중이며, 향후 정비가 완료된 개방 데이터와 현재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는 데이터의 제공시기 및 데이터의 오류가능성 등을 표시하여 일반 공중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함

5. 조정결과

- 조정성립